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
일부개정법률안
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21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8.

발 의 자 : 박 정·안호영·김남근
송옥주·김주영·김태선
박해철·김정호·황명선
송재봉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·운용하도록 하고 있음.

한편,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무공해차 확산,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과 석유 비축·자원개발 등 자원안보 관련 사업을 함께 지원하여 왔으나, 에너지·자원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분리됨에 따라 정책 기능에 맞게 재정지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, 에너지 전환 분야는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여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·적응·공정한 전환 등 기후대응 사업과 연계하고, 석유·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는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함으로써 기후·에너지·자원 분야의 재정지원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. 아울러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

적 지원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에너지 전환 지원을 명확히 하고,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·판매부과금 등 종전 특별회계 법정 부담금의 일부와 추가적인 일반회계 전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종전 특별회계의 자산·부채 및 권리·의무를 차질 없이 승계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(안 제69조제2항, 제70조, 제71조제2항 및 제71조의2 신설).

주요내용

- 가.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하여 기금 수입 항목에 추가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함(안 제69조제2항).
- 나. 기후대응기금의 지출 용도에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(안 제70조제2호).
- 다.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전입액 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, 기금의 목적 및 용도를 고려하여 ‘자원안보기금’으로부터 종전 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일부를 기금에 전입하도록 함(안 제71조제2항 및 제71조의2).

참고사항

- 가. 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.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제2항에 제4호의2,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71조의2에 따라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에 따른 자원안보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
7의2.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3조의3에 따른 과징금

7의3.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

제70조제2호 중 “산업”을 “산업·에너지”로 한다.

제7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기금은 지출 재원(財源)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.

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1조의2(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)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「국가

자원안보 특별법」 제41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제2호,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정부담금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에 징수한 총금액 (법령에 따라 환급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) 중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9조제2항제7호의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9조제6항은 202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폐지)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은 폐지한다.

제3조(종전 특별회계의 결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(이하 “종전 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2026회계연도 세입·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이월예산의 승계) ① 종전 특별회계의 2026회계연도 이월예산의 승계는 2026회계연도의 소관 중앙관서 및 집행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. 해당 사업 또는 그 목적과 내용을 승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2027회계연도의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에 계상된 경우에는 그 경비가 계상된 회계 또는 기금이 해당 이월에

산을 승계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승계할 회계 또는 기금을 정할 수 없는 이월예산은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일반회계가 승계한다.

제5조(결산상 잉여금의 이입) 종전 특별회계의 202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중 부칙 제4조에 따라 승계되는 이월예산에 상당하는 금액은 2027회계연도의 해당 회계 또는 기금에 각각 이입하고, 그 나머지 금액은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(이하 “기후대응기금”이라 한다)에 이입한다.

제6조(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채무의 승계) 종전 특별회계가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한 금액 중 2026년 12월 31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채무(이하 “예수금채무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금이 각각 승계한다.

1. 예수금채무의 1천분의 792: 기후대응기금
2. 예수금채무의 1천분의 208: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 제39조에 따른 자원안보기금

제7조(자산등의 승계) ① 종전 특별회계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·채무 및 그 밖의 권리·의무(예수금채무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자산등”이라 한다)의 승계는 그 취득 또는 발생과 관련된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. 해당 사업 또는 그 목적과 내용을 승계한 사업에 따른

수입·지출이 2027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수입·지출계획에 계상된 경우에는 그 수입·지출이 계상된 회계 또는 기금이 해당 자산등을 승계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승계할 회계 또는 기금을 정할 수 없는 자산등은 그 취득 또는 발생과 관련된 사업에 따른 수입·지출이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귀속되는 회계 또는 기금이 승계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계할 회계 또는 기금을 정할 수 없는 자산등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자산등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일반회계가 승계한다.

제8조(중전 특별회계의 법률행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중전 특별회계의 출자·출연·보조·용자 및 그 밖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·의무를 부칙 제7조에 따라 회계 또는 기금이 승계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그 권리·의무를 승계한 범위에서 해당 회계 또는 기금에 관하여 한 것으로 본다.

제9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1호를 삭제한다.

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2.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

② 법률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3제3항 중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된다”를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징수한 과징금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으로 하며, 산업통상부장관이 징수한 과징금은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에 따른 자원안보기금의 수입으로 한다”로 한다.

③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2항 중 “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”를 “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④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8조제2항제2호 중 “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”를 삭제한다.

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제3호 중 “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”를 삭제한다.

⑥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8제5항 중 “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귀속된다”를 “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9조(기후대응기금의 설치) ① (생략)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5. ~ 7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8. ~ 9. (생략) ③·④ (생략)	제69조(기후대응기금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4의2. 제71조의2에 따라 「국가 자원안보 특별법」에 따른 자 원안보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. ~ 7. (현행과 같음) 7의2.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 ·보급 촉진법」 제23조의3에 따른 과징금 7의3.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8. ~ 9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70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 1. (생략) 2.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<u>산업·</u>	제70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산업·</u>

노동·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. ~ 12. (생 략) 제71조(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)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에너지</u>----- ----- 3. ~ 12. (현행과 같음) 제71조(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) ② 기금은 지출 재원(財源)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. 제71조의2 (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)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 제41 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40 조제2호, 제4호 및 제5호에 따 른 법정부담금에 대해 해당 회 계연도에 징수한 총금액(법령 에 따라 환급하는 금액을 공제 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) 중 1 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.
--	--